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54호
개정	2010년	4월	22일	조례 제1093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40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년	4월	2일	조례 제134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3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21년	5월	17일	조례 제190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오산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4>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유료 광고비용에 준하는 금액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
· 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행정동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4>

제12조(손해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삭제 <2021. 9. 24>

부칙 〈2021. 5. 17 조례 제19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오산시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 9. 24>